

제266회(정례회) 제3차본회의
2007년 12월 21일 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7. 12. 21.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2월 3일

충청북도지사

나. 회 부 일 자 : 2007년 12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7. 12. 17 제266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김태관 복지여성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2008. 1. 1일 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·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, 시·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함.(안 제2조)
-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.

Ⅲ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)

- 본 조례안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(07.4.25)하여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도는 20%, 시군은 80%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자치단체(도, 시군)간 부담비율을 20대 80으로 부담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Ⅴ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Ⅶ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Ⅸ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9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년 12월 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08. 1. 1일 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·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, 시·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함.(안 제2조)
-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.

3. 제정근거 : 기초노령연금법

4. 조 례 안 : 불 임

5. 관계법령 : 불 임

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담기준)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, 시·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.

제3조(부담기준 변경 등) 도는 제2조 규정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기초노령연금법

제19조 (비용의 부담)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1.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.
2.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상호 분담하되,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고,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

제16조 (비용의 부담 등) ①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별로 부담하는 연금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도는 매년 시·군·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부담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, 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은 정산한다.

③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.